

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원격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성적을 산정한다.
- 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제1항의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,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, 제4항 해당하는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합산한다.
- ⑥ 제4항에 따른 원격교육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제28조제4항 중 “최근 10년 이내에”를 “4급이상은 최근 3년, 5급은 최근 4년, 6급은 최근 3년, 7급이하는 최근 2년으로 하고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8조 개정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25조(교육훈련성적 평정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	제25조(교육훈련성적 평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원격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성적을 산정한다.</u> ⑤ <u>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제1항의 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,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, 제4항에 해당하는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합산한다.</u> ⑥ <u>제4항에 따른 원격교육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</u>
제28조(승진후보자 명부 작성) ① ~ ③ (생략) ④ <u>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<u>최근 10년 이내</u>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(승진후보자 명부의 각 평정점수 소수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 서 반올림한다. 이하 같다)을 평</u>	제28조(승진후보자 명부 작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<u>4급이상은 최근 3년, 5급은 최근 4년, 6급은 최근 3년, 7급이하</u>는 <u>최근 2년</u>으로 하고,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(승진후보자 명부의 각 평정점수 소수</u>

균하여 산정한다.

<신 설>

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. 이하 같다)을 평균하여 산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28조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